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6. 11.

발 의 자 : 방종영, 서정우의원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(2007.5.11, 법률 제8423호)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(2007.10.4, 대통령령 제20306호)의 법률 조문번호 및 주요용어·표현 등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·제39조·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” 로 변경(안 제1조)
- 정례회 회기의 본회의 의결 사항(안 제3조)
- 제4조 중 “영 제19조의4” 를 “영 제54조” 로 변경(안 제4조)
- 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25조” 를 “법 제134조” 로, 같은조 제2항 중 “법 제36조제1항” 을 “법 제41조제1항” 으로, “법 제118조” 를 “제127조” 로 변경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입법예고 : -
- 다. 개정조례안 : 별첨
- 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8조·제39조·제41조” 를 “제44조·제45조·제47조” 로 “제19조의4” 를 “제54조” 로 한다.

제3조 단서 중 “연장·단축” 을 “연장” 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영 제19조의4” 를 “영 제54조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125조” 를 “제134조” 로, 같은조 제2항 중 “제36조제1항” 을 “제41조제1항” 으로, “제118조” 를 “제127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8조·제39조·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제44조· 제45조·제47조----- -----제54조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회기)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·단축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회기) ----- ----- -----연장----- -----</p>
<p>제4조(집회일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</p>	<p>제4조(집회일) ---제54조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.</p>	<p>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-----제134조----- ----- -----</p>

<p>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고,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.</p>	<p>②-----제41조제1항----- -----제127조----- ----- -----</p>
---	---